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145호

丽水地方海洋水产厅 公告 第2026 - 145号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미배달)로 등기우편이 계속 반송(3회) 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为依据《海洋环境管理法》第19条征收海洋环境改善负担金，本机关拟通过邮寄方式向相关当事人送达《海洋环境改善负担金事前通知书（意见陈述通知）》。但因收件人不在等原因导致邮件未能送达，挂号邮件连续三次被退回，无法完成送达。因此，根据《行政程序法》第14条第4款的规定，现公告如下，予以公示送达。]

2026년 10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1. 공고제목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公告名称：海洋环境改善负担金事前通知书(意见陈述通知) 公示送达]

2. 공고기간 : 2026. 10. 7. ~ 10.27.

[公告期限：2026年 10月 7日 ~ 10月 27日]

3. 관련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相关法律法规：《海洋环境管理法》第19条，《行政程序法》第14条 及 第21条]

4. 송달내용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送达内容：海洋环境改善负担金事前通知书(意见陈述通知)]

해양오염사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海洋污染事故 海洋环境改善负担金 事前通知书(意见陈述通知)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根据《行政程序法》第21条第1款的规定，现将本机关拟作出的行政处分事项通知如下，请您在规定时间内陈述意见。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拟作出的行政处分名称	征收海洋环境改善负担金	
당사자 当事人	명칭(대표) 名称(姓名)	복주홍룡해양수산유한공사(대표 : Chen cheng) 福州宏龙海洋水产有限公司(代表 : Chen cheng)

	주 소 地 址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푸칭시 청터우진 하이청로 18호 위안홍 징둥 식품 디지털 경제 산업센터 6동 270호 福建省福州市福清市城头镇海城路18号元洪京东食品数字经济 产业中心6座270室					
	실주소 (우편수령지) 实际地址 (邮件收件地址)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푸칭시 청터우진 하이청로 18호 위안홍 징둥 식품 디지털 경제 산업센터 6동 270호 福建省福州市福清市城头镇海城路18号元洪京东食品数字经济 产业中心6座270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作出行政处 分的事实依 据	'21. 12. 3.(금) 10:55경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방 12해리 해상에서 중국어선 FUYUAN YU8660호가 침수·침몰되어 중유 등 35,230ℓ 해상에 유출 2021年12月3日（星期五）10时55分左右，在韩国丽水市南面甘汝岩东南方向12海里海域， 中国籍渔船FUYUAN YU8660号发生进水、沉没事故，导致重油等污染物共35,230升泄漏至海上。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拟作出的行 政处分内容	해양환경개선부담금(7,555,100원) 부과 征收海洋环境改善负担金 7,555,100韩元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法律依据及 相关条文内 容	○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海洋环境管理法》第19条（海洋环境改善负担金）第1款：海洋水产部长官对于对海 洋环境及海洋生态系统产生显著影响的下列行为，征收海洋环境改善负担金（以下简 称“负担金”）。]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从船舶或者海洋设施向海洋排放达到总统令规定规模以上的污染物质的行为] ③ 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负担金应根据污染物质的种类及排放量进行计算，在污染物质排放量乘以单位排放量 征收金额后，按照污染物质种类适用相应的征收系数予以征收。其中，污染物质的 排放量、单位排放量征收金额以及按照污染物质种类确定的征收系数等，由总统令 规定。]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海洋环境管理法施行令》第25条之2（船舶等海洋环境改善负担金的计算）]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의3과 같다. [根据本法第19条第3款规定，污染物质的单位排放量征收金额及按照污染物质种类确 定的征收系数，依照附表3之3执行。]						
의견제출 意见陈述	제출처 提交机关	기관명 机关名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丽水地方海洋水产厅	부서명 部门 名称	해양수산 환경과 海洋水产 环境科	담당자 负责人	조 봉 기 曹 奉 基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서1로 107	전화번호	061-650-6081		

	地址	大韩民国 全南光州统合特别市 丽水市 丽西 1路 107号	电话号码	+82-061-650-6081
	전자우편 주소 电子邮件 地址	city7983@korea.kr	팩스번호 传真号码	061-654-2129 +82-061-654-2129
	제출기한 意见陈述期限	2026년 10월 27일까지 2026年 10月 27日 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인

丽水地方海洋水产厅长(印)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提交意见时的注意事项>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您可以针对上述事项, 通过口头方式、信息通信网络或者按照附件第11号格式以书面形式陈述意见, 并可以同时提交证明相关主张的证据材料。但是, 如您拟通过信息通信网络提交意见, 请事先告知意见提交机关, 并在提交意见后向负责人确认意见是否已经送达。]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如您未在规定的意见陈述期限内提交意见, 将视为您没有意见。]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如您希望出席行政机关并进行意见陈述, 请事先将该情况告知行政机关。]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如对其他事项有疑问, 请向意见提交机关咨询。]

5. 기타사항

[其他事项]

- 가.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公告期限届满后, 根据《行政程序法》第15条(送达的效力发生) 第3

款的规定，本文件将视为已经送达公告对象，特此告知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조봉기 주무관
(☎ 061-650-6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如有其他疑问，请联系丽水地方海洋水产厅海洋水产环境科主管人员
曹奉基 (☎ *82-061-650-6081) °完]